

GGWF REPORT

2020-07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개발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혁수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 **감수위원**

공창숙 (서울한영대학교 교수)

송지연 (의왕시 아동복지과 주무관)

유경미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5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 연구의 목적

-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위탁지표를 개발하고 시·군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시설의 종사자 인원을 기준으로 10인 이하인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정의하고 분야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과 구분이 필요한 영역을 나눈 지표

□ 연구방법

- 문헌검토 및 사례분석
 -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탁지표를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항목 도출
 - 경기도 시·군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장점을 승계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함
- 공무원, 현장의 의견수렴
 -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설현장과 공무원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지표 정리

□ 연구결과

- 기존지표와의 차별화
 -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확인에 필요한 지표를 최소화 하고 사업의 이해와 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 등을 측정하는 지표 중심으로 개발
- 공통지표(정량지표)와 선택지표(정성지표)의 사용
 - 회계집행, 지도감독 사항여부와 조치결과, 시설평가결과 등 정량평가를 포함한 공통내용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격의 항목들은 정성지표로 선택할 수 있는 구조
- 신규위탁과 재계약의 경우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도록 구분 제안
 - 공개모집을 통한 최초위탁과 기존 운영주체의 재계약은 구분하여 위·수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분된 지표(안)을 제시함

〈표 1〉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의 내용¹⁾

심사 영역	신규위탁 심사 문항	심사 영역	재계약 심사 문항
A 수탁 자의 적격성 (28)	1. 수탁신청자의 시설 운영 연계성	A 수탁 자의 적격성 (18)	1. 법인의 회계감사 수행여부와 개선정도
	2. 법인 또는 단체의 이사회 구성		2. 수탁기간동안의 지도감독 사항과 이행결과
	3.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 투명성		3. 운영시설의 평가결과
	4. 법인 또는 단체의 지도감독사항		
	5. 기존 운영시설의 평가결과 (신생법인 미해당)		
B 시설운영 의 전문성 및 책임성 (25)	6. 시설장의 자격증 소지 여부	B 시설운영 의 전문성 및 책임성 (35)	4. 시설장의 자격증 증명
	7. 시설장 또는 법인(단체) 관계자의 시설 수 탁 운영에 대한 의지		5. 시설장의 시설 재수탁 의지
	8. 종사자 인력 확보 및 운용 계획		6. 종사자 인력 확보 실행여부
	9.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7. 사업계획의 이행실적
C 지역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10. 지역사회와의 협력 노력	C 지역사회 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8. 지역사회와의 협력 노력
E 종합의견 (6)	11. 심사위원 재량 판단	E 종합의견 (6)	9. 심사위원 재량 판단
D 선택지표	12. 신청자의 사업과 기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D 선택지표	10. 신청자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13. 시설장의 경력사항 확인 계획		11. 시설장의 경력사항 확인
	14. 인력관리(건강, 인권감수성, 범죄사실) 계획		12. 인력관리(건강, 인권감수성, 범죄사실)계획의 실행 여부
	15. 안전교육 실시 계획		13.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1)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 지표 총괄표와 지표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음

목차

I |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3

II | 경기도 소규모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 5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현황 5
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영역과 사례 8
3. 시사점 18

III |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 / 23

1. 지표의 개발 과정 23
2. 지표의 구성 방향 25
3.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안) 28

IV | 결론 / 33

| 참고문헌 / 37

| 부록 / 39

표 차례

〈표 Ⅱ-1〉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 현황	7
〈표 Ⅱ-2〉 심사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8
〈표 Ⅱ-3〉 최근 3년 소규모시설 위탁심의기준 비교	11
〈표 Ⅱ-4〉 다함께돌봄센터 심사기준 사례	16
〈표 Ⅲ-1〉 자문회의 참석자 현황	25
〈표 Ⅲ-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신규위탁)	30
〈표 Ⅲ-3〉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재계약)	31
〈표 Ⅳ-1〉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 내용	33
〈표 Ⅳ-2〉 신규위탁과 재계약 위탁절차	34

그림 차례

〈그림 I-1〉 연구수행체계	4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 및 시·군은 시설 중 이용자가 많은 대형 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소규모시설¹⁾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
 - 전국의 민간위탁 사업 수는 9,652건이며 이중 사회복지분야가 약 41.5%를 차지함
경기도 이용시설은 약 93%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 가능
 - 경기도 내 시설은 여성 및 다문화가족 분야까지 합하여 약 2만6천여 개소에 이르며 분야별 소규모 시설의 종류는 20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소규모시설로 분류되고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시설의 유형은 적지만 현장에서 이용자들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큼
- 소규모 시설의 필요성과 수요에 따른 자원공급과 서비스 질 강화 필요
 - 이용자와 가장 근접한 곳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규모가 작은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대형 시설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과 인력부족에 처해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자원의 분배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시설 지원사업(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 컨설팅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형편임

1) 시설의 이용자 수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장애인, 노숙인 시설은 이용자 수 10인 미만, 노인시설의 경우 이용시설은 30인 미만, 생활시설은 10인 미만, 아동시설의 경우 이용시설 10인 미만,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는 아동 수 8인 미만 시설 (경기복지재단, 2019)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종사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를 포함

- 따라서 공공을 대신하여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수탁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며 수탁자 선정시기부터 전문성을 가려내고 재계약을 하더라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
- 지자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 등에 따라 그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함
 - 민간위탁 심의과정에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심의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92.6%에 이룸(국민권익위원회, 2018)
 - 특히, 소규모시설에 대한 심의기준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형이용시설의 기준을 응용하여 지표를 정하고 형식적으로 위탁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2019년 시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시설 및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 선정 기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42.1% 나타남
 - 특히, 재계약을 통해 연속으로 위탁하는 비율이 높은 시설의 경우 재수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운영성과를 제시하도록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2019년 연구를 통해 이용시설의 위탁심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공, 활용 중에 있으나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모두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2016년 이후 연구자 자체조사 결과로는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에서 지표를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지표가 주로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위탁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운영주체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음
- 소규모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탁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심의기준(지표)의 개발이 시급함
 - 대형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 현장을 잠식, 운영하는 현실에서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소규모의 생활시설을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를 평가 점검 받을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시설장의 전문성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인력구성 및 활용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측정도구 확보 필요

□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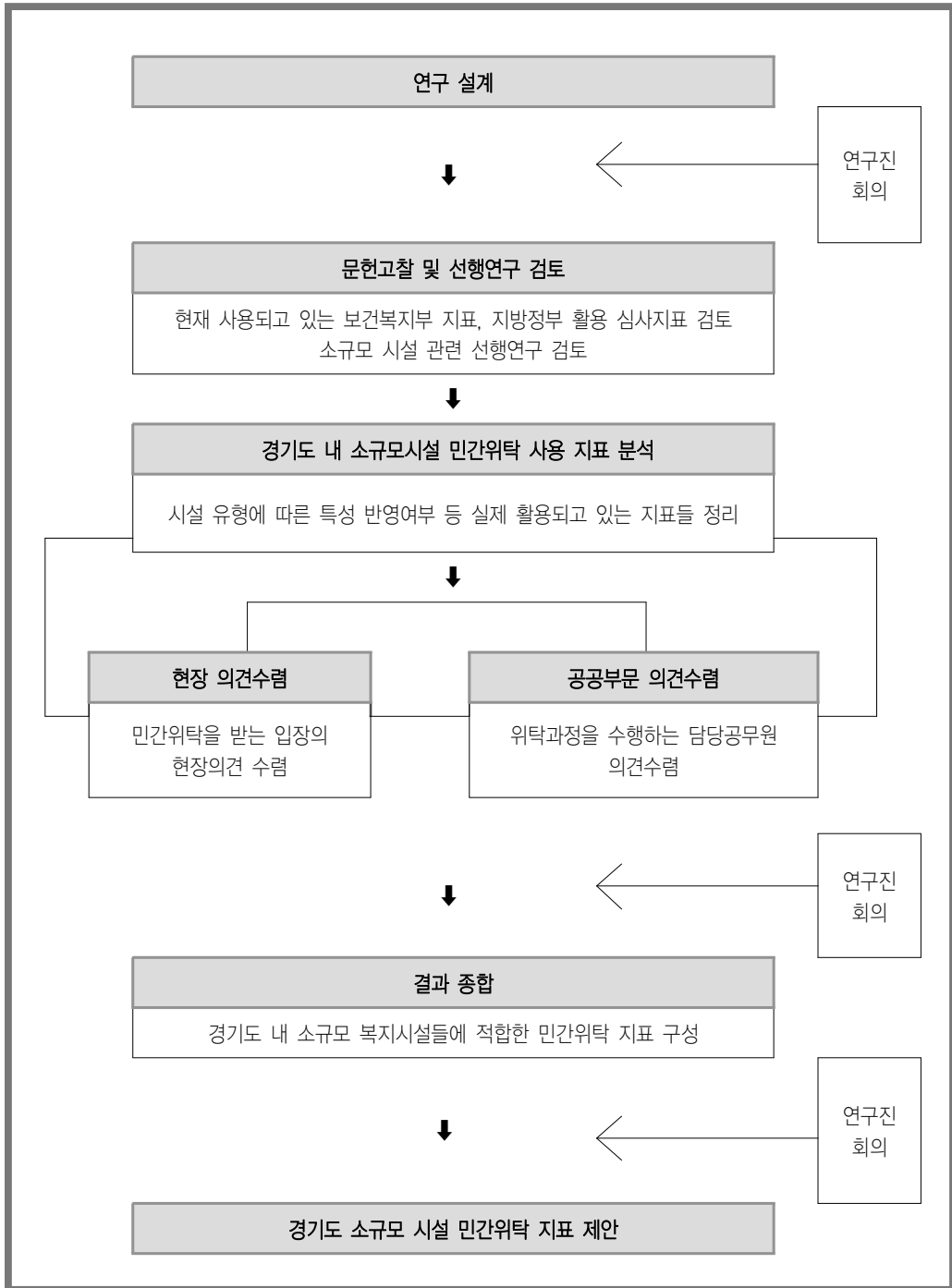
- 경기도 내 시설 중 소규모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위탁 과정에 활용 될 수 있는 위탁지표를 개발하여 시·군 담당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시설 중 소규모시설을 정의하고 대형 이용시설과 구분되는 내용으로 지표를 구성하고자 함
 - 인력의 전문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수탁시설 운영에 대한 이해도 등 실제 이용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성적 요소들로 구성
 - 현재 시·군에서 활용중인 기존 지표를 토대로 수탁자선정심의지표를 개발하고 신규위탁 지표와 재계약 지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소규모 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시설들이 분야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절차를 제안함

2. 연구 방법

- 문헌검토
 - 보건복지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의하는 시설 중 소규모 시설의 현황 검토 및 선행연구 분석
- 자료분석
 - 현재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정부에서 활용되고 있는 위탁지표를 비교분석하고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영역과 항목 도출함
 - 기존 민간위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군별, 시설유형별 지표를 검토하여 장점과 강점을 그대로 승계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식을 취함
 - 경기도 내 9개²⁾시·군의 지표를 정밀 분석 비교하고자 함
- 공무원,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자문
 -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지표 구성
 - 공통영역과 선택영역의 분리에 대한 의견 수렴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비율 및 분리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

2) 부천시, 파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고양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그림 I -1〉 연구수행체계



Ⅱ 경기도 소규모시설 현황과 민간위탁

1. 민간위탁 제도의 개념과 현황

□ 시설 민간위탁 개념 및 법적근거

- 민간위탁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특정 서비스를 민간기관(영리 또는 비영리 기관)을 선정하여 정부 대신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경기복지재단, 2019)
 -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³⁾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제3항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음
- 시설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시·군의 자치법규에 근거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⁴⁾ 등에 의거 업무가 위탁됨
 - 시·군별로 민간위탁사무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형태 위탁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634호

4) 시·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에 맡겨 운영하는 것 (시설형 위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소규모 시설 개설 및 운영 현황

- 소규모 시설은 서비스 분야와 이용자의 수 상근 종사자 인력의 수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경기복지재단, 2019)
 - 장애인분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용자 최소 10명, 인력 5명 이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용자 최소 10명이상, 인력 6명 이상),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자 4명, 인력 1명) 등으로 다양함
 - 설립 기간을 5년 미만, 종사자 5인 이하로 정의하여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음
 - 소규모 시설을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정의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음⁵⁾
- 기존의 연구나 지원 사업을 종합하면 소규모시설은 이용자 40인 이하에서 4인까지로 다양하며 종사자 수는 10인 이하에서 1인까지로 나뉨
 - 보건복지부의 시설 안내에서 종사자 인력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유형은 다양함
 - 적어도 인력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은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종사자 수가 서비스 제공에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분야에 상관없이 종사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시설로 정의하고자 함
 - 이는 단위사업을 받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경우의 일시적인 기간제 인력을 포함하지 않으며 종사자 인력기준 상 정규직 종사자가 해당 됨
-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은 약 1,600여 개소⁶⁾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분야는 아동 분야에서 가장 많음
 - 노인분야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생활시설이 있으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주야간보호시설 등이 단독으로 또는 복지관의 부설시설로 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함께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수탁 받으면서 부설기

5) 서울시장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참조

6) 음영처리 된 시설유형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유형이며 모든 시설이 위탁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국공립이나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들이 해당됨

- 관으로 함께 수탁하는 경우와 단독시설을 위탁 받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시설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이 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 아동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가장 많고 대표적인 소규모시설에 해당되며 최근 시·군에 설치를 시작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표 Ⅱ-1〉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 현황

시설 구분	시설유형	개소 수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시설
노인	• 노인공동생활가정	32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56	56
	• 재가장기요양기관	172	
	• 주야간보호시설	3	3
	• 시니어클럽	20	20
소 계		283	
장애인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7	27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7	127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95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4	14
소 계		263	
노숙인	• 노숙인자활시설	11	
	• 노숙인재활시설	3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	
소 계		17	
아동	• 아동공동생활가정	148	
	• 지역아동센터	788	236
	• 다함께돌봄센터	42	42
소 계		978	
한부모	• 한부모가족시설	12	
정신장애(사회복귀)	• 정신재활 입소시설	43	
	• 정신재활 공동생활가정	6	
	• 주간이용시설/직업재활센터	13	13
소 계		74	
기타	• 단기청소년쉼터	24	24
	• 지역주민 커뮤니티센터	2	2
계		1,641	564

*자료: 경기도 내부자료(2019), 2020년 다함께돌봄사업안내(2020), 2020년 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1권(2020), 고양시청 홈페이지

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영역과 사례⁷⁾

□ 위탁심사의 영역 구분

-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민간위탁 심사에 사용된 지표의 사례를 보건복지⁸⁾의 영역구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면 세 가지로 대별 됨
 - 심사영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표는 제시되지 않음
 - 수탁자의 적격성 영역에 30점을 배치하고 내용 중 시설과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명시함
 -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50점을 부여하고 내용은 특히, 시설장의 전문성 확보와 공개모집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중요시 하여 이에 20점을 부여하고 있음

〈표 II-2〉 심사기준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

구분	배점	특이사항(가점적용 등)
수탁자의 적격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및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 90% 이상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위탁받을 경우 가점 부여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의 전문성에 10점 이상 배점 · 시설장을 공개모집 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 받을 경우 가점 부여 · 시설장을 공개모집하지 않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사회에서 임명 또는 시설장이 타 직위를 겸직할 경우 감점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20	

- 수탁자의 적격성은 주로 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형 및 설립목적, 보유자산, 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 실적 등을 확인함
 - 이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시설에 대한 책임성과 수탁기간 동안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지를 가늠하기 위한 영역임

7) 지난 3년간 각 시·군에서 위탁이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여 내용을 정리함.

8) 보건복지부(2019) 시설 관리안내에 제시된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 예시 참고, 지표 구성을 위한 대분류의 기초가 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기본자산, 후원현황, 자원봉사자 현황, 타 시설의 운영 기간 동안 평가 결과 등 보다 세분하여 확인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큰 틀에서 확인하는 차원을 넘지 않는 지자체가 있음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에서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시설장과 종사자 인력구성, 사업계획이나, 재정 투명성에 대해 확인하며 대부분 비중이 가장 높은 영역임
 - 소규모 시설일수록 시설장의 역량과 전문성이 서비스 제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설의 인력구성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소규모 시설은 대부분 취약계층을 주 개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권, 건강 부분까지 인력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은 점차 확대되는 지역사회 내 복지의 패러다임에 맞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구축하고 사회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지역사회 내 자원과 협력에 일정부분을 의존하는 시설들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또는 실제 부족한 인력과 자원의 보충을 위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도 협력 역량이 필요할 것임

□ 최근 3년 소규모시설 위탁심의 지표의 특징

- 시설 유형 또는 시·군의 방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는 이를 표준화 하는 작업 필요
 - 수탁자의 적격성 영역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청소년쉼터를 위탁할 때는 법인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9년 이후 위탁을 진행한 경우는 법인에 관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질문문항이 거의 같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법인의 적합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영역에서는 장애아치료교육센터, 단기청소년쉼터 등에서는 평가 문항이 많지 않았음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일수록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실현 가능성, 효용성 등을 살펴보아야 함에도 그러한 내용이 많지 않음
 - 다른 유형의 시설들도 주로 예산이나 재정부담 계획 등에 비율이 높으며 인력의 구성과 운영 또한 구체적이지 않음

□ 공통지표와 상이지표

- 위의 세 가지 영역에 포함되는 지표를 공통지표와 상이지표를 분류하면 향후 표준지표의 지향점을 도출 할 수 있음
 - 수탁자의 적격성에 해당하는 공통지표는 ①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②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과 시설 수탁의 연계성 ③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의 적절성 ④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지도감독 사항이 포함됨
 - 상이지표는 ①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정도 ②인력지원여부 ③수탁시설담당직원 유무 ④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수행조직 등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환경 ⑤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능력(자본금규모 등)이 포함되었음
 - 시설유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영역에 해당하는 공통지표는 ①시설장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관련경력 ②시설장의 시설 수탁운영에 대한 추진의지 ③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④종사자 역량강화 및 복리향상방안의 구체성 ⑤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⑥사업계획서 내 예산편성의 적절성 ⑦ 시설운영의 중장기계획 적절성 ⑧수탁기간의 재정부담 계획 ⑨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있음
 - 상이지표는 ①관련 경력기간 ②운영계획의 목표 및 목적 적합성 ③프로그램 계획서 중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④운영비 집행 적절성 및 사업 활성화 계획 ⑤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업수익·후원금액이 포함되었음
 - 지역사회공신력 및 협력적관계조성 능력의 공통지표는 ①사업계획상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계획 ②홍보계획 정도가 포함됨
 - 상이지표는 ①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②기관운영을 위한 지역사회관계 개발 및 자원 확보 계획이 들어있음
- 공통지표는 분야와 유형에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며 상이지표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표현이 다르거나 추가사항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로 구성

〈표 II -3〉 최근 3년 소규모시설 위탁심의기준 비교

· 수탁자의 적격성 영역

00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9)	00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17)	00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9)	00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9)	00시 단기청소년쉼터 (2018)	00시 시니어클럽 (2018)	00시 커뮤니티센터 (2020)
· 사회복지법인 여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해당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운영에 적합한 법인형태(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운영에 적합한 법인형태(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회계집행 적절성	· 회계감사를 통한 점검유무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회계집행 적절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회계집행 적절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회계집행 적절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회계집행 적절성
	·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도감독 사항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도감독 사항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도감독 사항
	· 사회복지관련 수상 횟수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정도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정도	· 인력지원여부 (사업운영 시 자체지원가능여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정도	· 수탁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소재지와 지역사회기여도

00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9)	00시 장애인 재활치료교육센터 (2017)	00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9)	00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9)	00시 단기청소년쉼터 (2018)	00시 시니어클럽 (2018)	00시 커뮤니티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사업 운영기간 시설 운영실적(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기본재산 및 수혜조직 등 법인 환경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수탁실적 3년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 여건 수탁시설 담당직원 유무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수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 여건 수탁시설 담당직원 유무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수탁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시설 운영 및 업무 수행 경험여부(3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 수탁실적 수탁시설담당직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회복지사업수행 능력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구성의 시설 운영 적합성 이사회 운영실적과 활동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활동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활동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 구성의 시설 운영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활동의 지속적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복지부 수탁 시설 평가 및 운영지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분야 시설의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분야 시설의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 시설의 평가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탁시설지도감독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원자현황 및 자원봉사자 현황 최근 3년 후원금 및 수입사업현황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영역

00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9)	00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17)	00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9)	00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9)	00시 단기청소년쉼터 (2018)	00시 시니어클럽 (2018)	00시 커뮤니티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의 경력 5년 이상 및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 열정 등의 적합성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종사자 역량강화 및 복리향상방안의 구체성 운영계획의 목적 및 목표의 적합성 프로그램 계획서 중 목적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유무 시설장의 시설운영의 열의와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 여부와 경력 시설장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시설장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 학력 및 전문자격취득여부 관련 경력 3년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의 경력 및 1급자격증 소지 시설장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장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시설장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 전문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편성의 적합성 시설 운영의 중장기계획의 적절성 예산(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부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단기계획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재정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의 중장기계획의 적절성 수탁기간의 재정부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의 중장기계획의 적절성 수탁기간의 재정부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서 작성의 충실도 및 현실성 운영비 집행적절성 및 사업 활성화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시설의 사업계획의 예산편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운영의 중장기계획의 적절성 수탁기간의 재정부담 계획

00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9)	00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17)	00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9)	00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9)	00시 단기청소년쉼터 (2018)	00시 시니어클럽 (2018)	00시 커뮤니티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조합 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원 출처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부채의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 이행실적

·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영역

00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019)	00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2017)	00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2019)	00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19)	00시 시니어클럽 (2018)	00시 커뮤니티센터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방안의 현실성 기관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자원확보계획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공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상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상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상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상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계획 심사위원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계획 심사위원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계획의 내용 심사의견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계획 심사위원 종합의견
공 통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형태의 적격성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과 시설 수탁의 연계성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집행의 적절성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지도감독 사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 여건 관련시설 운영 및 업무수행 경험 이사회 구성의 시설 운영 적합성 이사회활동의 지속적 수행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의 평가결과 					
상 이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마선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정도 인력지원여부 수탁시설 담당 직원 유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조직 등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환경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능력 (자본금 규모) 					

□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실제 사례 (다함께돌봄센터)

-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아동분야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만 보아도 각 시·군별로 다른 지표를 적용하고 있음
 - 기준으로 삼은 영역마다 배점이 다르며 중요영역의 내용이 상이하게 제시됨
 - 우선 심사기준이 신규위탁을 위한 기준과 재위탁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으나, 구분 없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신력과 사업능력을 측정하는 영역에 배점을 상당부분 할애하고 있음
 - 이는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게 되므로 신규와 재위탁의 경우에 다른 지표구분이 필요함
 - 심사항목은 공신력이지만 각각 묻는 내용이 상이하고 배점 또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공신력은 대체로 시설을 수탁 받으려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정, 전문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건설하고 운영이 목적에 맞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함
 - 따라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배점을 할애하기 보다는 명확한 지표를 가능한 한 적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II-4〉 다함께돌봄센터 심사기준 사례

시군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배점	총점	지표
△△시	공신력 (30)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목표와 방향의 적합성	15	100	7개
		관련 사업의 수행 실적 및 전문성	15		
	사업수행능력(60)	다함께돌봄 사업에 대한 이해도	20		
		다함께돌봄 사업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0		
		다함께돌봄 사업 구축에 대한 의지	10		
	재정능력(10)	지역사회 연계협력 및 활용계획 적정성	10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자산 및 재정 안정성		10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이행능력	10	100	10개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방안	10		
	사업수행능력(30)	시설운영의 전문성	15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	15		

시군	심사항목 (비중)	심사지표	배점	총점	지표
	운영실적(20)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아동복지사업 추진실적	15		
		지역사회 기여도	5		
	재정능력(10)	신청자의 보유자산 및 부채상황	5		
		자부담 계획	5		
공신력(10)	행정처분 사항	10			
□□시	공신력(5)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유형	5	100	8개
	사업수행능력(15)	시설장의 전문성	15		
	재정능력(15)	자산 및 부채현황	15		
	관할지역(5)	관내 거주 기간	5		
	사업계획(10)	전반적인 시설운영 및 관례 관한 계획과 평가계획 수립	10		
	세부사업계획(25)	프로그램 및 사업 운영계획 내용	25		
	예산편성적절성(10)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 적절성	10		
	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15)	운영의지 및 향후 발전계획,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15		

- 각 시·군이 사용한 지표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업수행능력과 사업계획인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수행 능력 영역에 가장 많은 배점을 할애하고 있으며 △△시는 사업수행능력 안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의지 등을 담았음
 -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수행능력에 각각 30점을 배치하고 있으나 주 내용은 시설장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운영실적 영역을 두고 위탁계획뿐만 아니라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음
 - 또한 □□시에서도 세부사업계획에 가장 큰 점수를 배점함으로써 수탁을 신청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업 능력을 확인하는 의지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음

3. 시사점

□ 소규모시설 위탁지표의 구성

- 수탁자의 공신력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공신력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등 운영주체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
 - 이용시설은 지자체로 부터의 보조금 규모가 크고 추후 시설의 기부채납이나 인건비 운용 등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수탁법인의 재정 상태로 신뢰성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함
 - 소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비 규모로 종사자 인력의 역량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이나 실적 내용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됨
 - 또한 이용시설과는 달리 이용자(거주자)들과 매우 밀착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종사자의 건강상태, 안전교육 수료여부, 인권 감수성, 범죄 경력 등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에도 현재까지의 지표에는 빠져있음
- 지표의 수가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적어서 정량적, 정성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균형이 맞지 않음
 - 심사위원의 종합의견 이외에도 전문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정성지표와 객관적 자료로서의 정량지표의 균형적 배치를 통해 다차원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임
 - 그러나 지표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정성적 성격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너무 세분화 되는 경우에는 정량지표가 대부분임
 - 현재 활용되고 있는 기준들은 매우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단순해서 수탁자의 적합성, 전문성, 운영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소규모 시설에 대한 심사에서는 적은 지표를 사용하여 수탁자의 사업 실행 능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법인 및 비영리단체와 지자체가 모두 효과적으로 위·수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존 내용을 간소화함과 동시에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계획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이용자 수도 종사자 수도 적은 소규모 시설은 개인시설로 시작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발전한 경우가 있고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은 법인격으로서 처음부터 예산, 인력구성 등이 다르고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소규모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단체 등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인 경우가 많음
- 또 지자체는 새로운 형태의 소규모시설 운영을 위탁할 기관 선정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형편으로 제 각각의 기준을 제시하여 위탁심의 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과정과 심의지표

- 표준화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되어야 할 참고서류들이 증빙서류로서 분명하지 않음
 - 공개모집에서부터 위·수탁 계약체결 후 운영까지의 구체화된 절차와 과정을 따름으로써 지자체와 수탁자 모두 합리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소규모시설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많지 않은 실정으로 한 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들어와도 수탁이 가능한 상황임
 - 계약이 완료된 이후를 신규위탁 또는 재계약을 위한 절차와 과정 및 서류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표준화된 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수탁신청하면서 제안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표에서 요구하는 해설이 충분치 않음
- 신규위탁과 재계약⁹⁾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 위·수탁 과정과 지표 필요
 - ‘신규위탁’은 새로 설치되는 시설에 대하여 수탁자를 선정, 운영을 위임하는 것을 말함
 - ‘재위탁’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를 새로이 공개모집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말함
 - ‘재계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동일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위임하고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을 말함
 - 신생법인과 기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설 운영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뿐만 아니라 신생 법인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열어야 할 것임

9) 유정원(2019) 경기도 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측면에서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미해당 항목을 두고 기존법인의 평균값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
- 공개모집을 전제로 하는 신규위탁 이외에도 기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재위탁(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지표의 내용이 지난 수탁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을 살펴보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 운영주체의 입장에서는 재수탁(재계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성과를 증명하여 재위탁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함
 -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일관성과 이용자의 안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탁자의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재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차이는 최초 심의에서 보다 몇 가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타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과의 경쟁이나 구체적인 서류심사 과정을 제외하고 실적위주의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임

□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과 운영주체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 공통지표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건제함과 책임성을 입증할 수 있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과 시설장의 전문성,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 계획 등이 이에 속할 수 있음
 - 선택지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여 총점을 조정하여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예를 들어, 건강, 인권 측면에서 취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종사자 관리차원에서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증명하도록 하여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정부담 계획은 공공과 민간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달라지는 부분으로 더 이상 위탁심의회 지표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법인의 책임성 증명 도구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소규모 시설은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아동, 노인, 장애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아동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 보호, 학습지도 과정에서 시설 종사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므로 그 특성에 맞는 운영주체가 시설을 수탁하게 하는 지표선택이 있어야 함
 -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에서도 인지의 차이와 신체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Ⅲ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

1. 지표의 개발 과정

□ 실제 사례분석과 기존지표 검토

-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위탁심의를 진행한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사례를 수집·분석
 - 시설의 유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으나 가능한 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 공개모집 사례, 직접 참여하며 수집한 사례 등을 포함하여 지표를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담당부서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공통영역과 상이영역을 도출하고 공통영역을 정량지표화 하였음
 - 정성지표의 비율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군별로 또는 시설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표의 영역을 두었음
 - 예를 들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을 선택지표로 구성함으로써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뺄 수도 있도록 제안함
- 지자체사무의 민간위탁은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서 마련하여 제공
 -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자체법규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 기준을 준용하려면 광역단위의 구체적인 안이 필요함
 - 이에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2011년과 2013년, 2019년에 걸쳐 이용시설의 위탁심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에 제공, 활용할 수 있게 하였음
 - 경기도가 제안한 표준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한 기본조례, 수탁자선정심의를 위한 지표, 위탁자(지자체)와 수탁자(운영주

체) 계약서 등이 포함되었음

- 시설의 규모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개선하여 소규모시설 위탁을 위한 도구를 작성하고자 하였음
 - 당초 지표 설계가 주로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위탁받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 운영주체를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므로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능력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의 수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사업계획 내용, 시설장과 종사자 전문성과 역량 등에 중점을 둔 심사지표를 구상하였음
 -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의 영역을 차용하고 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서 작성한 지표를 기본으로 정량, 정성지표의 배점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제안함
- 소규모시설 민간위탁의 특성에 따라 공통심사영역을 분류하고 내용별로 지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량, 정성 지표를 구성하여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였음
 -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표 Ⅲ-2>, <표 Ⅲ-3>과 같이 소규모시설 지표개발 내용을 구성하여 항목으로 구체화 하였음

□ 민간과 공공의 시설 위·수탁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심사지표는 민간(수탁기관)과 공공(위탁담당부서)에 공통적으로 의견수렴하고 수정 보완함
 - 경기도 내 소규모시설¹⁰⁾ 관계자 및 실무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수탁자선정심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민간위탁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음
 - 직접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분야별 시설 현장
 -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 주체는 사·군의 시설담당 부서로 최종의견 수렴 과정 참여
 - 총 4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시설을 운영을 위탁하는 입장과 수탁하는 입장에서의 지표에 대한 의견 받음

1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함께돌봄 담당공무원 등

〈표 Ⅲ-1〉 자문회의 참석자 현황

구분	성명	소 속
현장 전문가	박OO 외 5명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설 담당공무원	김OO 외 2명	오산시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성남시 복지국 아동보호과
		의왕시 복지문화국 여성아동과

-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받기위하여 시설들에는 기초 안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완성된 지표를 사용할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음

2. 지표의 구성 방향

□ 기존지표와의 차별화

- 시설 수탁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역량 중심의 지표를 실제 운영주체의 전문성과 사업능력 중심으로 영역별 배점을 달리하였음
 - 대형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수탁자로서 기관운영을 위임받고 실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지역 내 종교단체 또는 법인 소속 개인일 경우가 대부분임
 - 이에 운영실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시설 운영수탁을 신청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정,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신뢰도 등으로 위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결과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은 법인을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시설의 운영을 맡기게 되는 현상이 있음
 - 소규모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들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재정이나 시설운영 실적 보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이

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 그침

- 보건복지부의 영역 구분을 기본으로 하되 내용을 세분화하고 배점 비율을 변화시켜 사업 운영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지표의 간소화

- 기존의 이용시설 중심의 지표에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의 내용 측면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등 약 21개의 지표로 가능한 한 세분화하여 법인의 사업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던 기존의 지표와 보건복지부,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지표의 핵심공통 지표를 중심으로 최소화함
 - 따라서 수탁자의 적격성을 검토하는 지표는 최소 3개에서 5개 수준으로 줄이고 점수 배점을 달리하였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지, 회계집행은 성실한지를 알아보는 지표 유지
 - 2019년 이후 시설장의 고용내용에 대한 변화¹¹⁾로 시설장 또한 종사자로 구분되면서 그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음
 - 이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로서의 시설장 자격과 사업에 대한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선택지표에 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음

□ 정량지표, 정성지표와 선택지표의 사용

- 공통심사영역 중에서 객관적 수치 제시가 가능한 한 지표를 정량지표로 채택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수탁자로서의 적격성을 측정하는 지표는 주로 회계집행 여부, 지도감독에서의 지적사항과 조치,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맞고 있는 시설들의 평가결과 등 정량적으로 측정할 내용을 지표화 하였음
 - 이는 집행부서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음

11) 2019년 시설 관리안내에서 공개모집 예외 사유를 삭제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가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신규위탁 시설을 수탁 신청할 때는 시설장 내정자가 위탁신청 설명을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므로 지표에서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 시설장 내정자가 설명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야함

- 위탁심의위원회 참여자는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정성지표를 구성하여 평가의 지나친 정량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음
- 선택지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영역의 지표들을 시·군에서 선택하여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음
 - 수탁을 신청하는 시설장 내정자의 자격은 정량적으로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사업의 내용이나 전문성을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시설장의 경력과 전문성에 대해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대로 선택하여 배점을 달리하고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선택지표에 포함시켰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 등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지표는 선택지표화 하여 결정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노인, 장애인, 아동 분야별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특히나 건강 및 질병 유무 여부와 같은 분야에서의 범죄사실 등을 확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여태까지는 종사자의 그러한 사실들을 증명하는 절차는 없었으므로 향후 종사자 인력 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선택지표화 함

□ 신규위탁과 재계약 지표의 구분

-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위탁과 재계약은 심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며 명확하게 분리된 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신규위탁 지표의 내용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 배점을 더 높게(28점)하였으며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25점을 배점하였음
 - 이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건전성과 운영주체의 전문성의 중요도가 적용된 결과이며 기존에 운영한 주체가 재계약을 할 때와는 내용면에 차이가 있음
 - 재계약에는 수탁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한 결과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을 통해 재계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수탁기간 동안 회계집행과 지도감독 받은 내용을 제외하고 전문성에 중점을 두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지표를 구성하였음

3.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안)¹²⁾

□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용될 심사지표 제안

- 보건복지부와 기존 경기도 심의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주체 평가 강조
 - 기존 수탁시설의 수 또는 재정 상태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역량을 판단하는 지표를 최소화하고 시설을 운영하게 될 주체의 전문성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는 지표 구성
 - 소규모 시설일수록 시설 운영 인력의 자격사항과 경력 등이 사업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시설장과 종사자 관련 지표에 배점을 높게 함
 - 특히,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인력의 건강상태, 인권 감수성, 안전교육에 관한 지표를 포함시킴으로서 이용자의 질병예방 및 안전을 고려하고자 함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선택지표를 혼용하여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
 - 수탁자의 적격성은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 영역으로 주로 정량지표화 하였으며 시설장의 의지 또는 고용계획 등은 심의위원의 전문가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정성 지표로 구성함
 - 시·군의 상황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지표를 선택지표를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선택할 수 있음
- 지표를 직접 사용하는 집단의 회의를 통해 내용적 균형을 유지하고 필요사항을 추가·보완
 - 시·군 담당 공무원은 실제 시설 민간위탁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과 새로 추가되어야 할 내용의 구체성에 대한 의견 제시
 - 객관적 입장에서 시설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비합리적인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 받음
 - 현장을 대변하고 경기도 내 소규모 시설운영 수탁자 입장과 공정하게 평가받고 싶은 영역에 대한 의견을 받음

12) 자세한 지표설명은 부록의 지표를 참고할 것

- 신규위탁 시 사용지표와 재계약 위탁 지표 분리하여 구성하였음
 -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위탁과 기존 시설을 기존 주체에 재계약 할 때 구분 사용
- 지표 사용 유의사항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지표는 설립 3년 미만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 (경쟁 법인의 평균값을 적용)
 - 배점과 내용은 지표의 내용은 위탁 상황에 맞게 시·군 담당이 변경할 수 있음
 - 선택지표의 사용여부는 시·군에서 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의견까지 포함하여 65점 만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쓸 수 있음
- D영역(선택지표)의 사용권장
 - 전체를 65점 만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선택지표의 내용을 전체 지표에 포함시키면 그대로 100점 만점으로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 선택지표의 사용여부는 시·군에서 결정할 수 있으나 특히, 신규위탁 지표 12~15, 재계약 지표 10~13번은 종사자 인력관리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가능한 한 사용하기를 권장함
 - 아동, 장애인, 노인은 모두 건강과 인권, 안전 부분에서 취약할 수 있는 서비스 대상으로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기인하는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표 Ⅲ-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신규위탁)

심사영역	심사 문항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A 수탁자의 적격성 (28)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6	4	2	1	
	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이사회 구성은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	2	1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준
	3.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1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 지도 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6	4	2	1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25)	6.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3	-	-	1	
	7.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6	4	2	1	
	8.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6	4	2	1	
	9.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8	6	4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10.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6	4	2	1	
E 종합의견 (6)	11. 심사위원 종합의견	6	4	2	1	
소 계		65	40	24	14	
D 선택지표	12.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7	5	3	2	
	13.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8	6	4	2	
	14.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는가?	10	8	6	4	
	15.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3	2	1	
	16. 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어떠한가?	6	4	2	1	
소 계		35	26	17	10	
총 계		100	66	41	24	

〈표 Ⅲ-3〉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재계약)

심사영역	심사 문항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A 수탁자의 적격성 (18)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1	
	2.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6	4	2	1	
	3.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해당사항 없음은 우수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5)	4.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3	-	-	1	
	5.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8	6	4	2	
	6.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의 실행여부는 어떠한가?	12	10	8	6	
	7. 시설의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은 어떠한가?	12	10	8	6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8.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6	4	2	1	
E 종합의견 (6)	9. 심사위원 종합의견	6	4	2	1	
소 계		65	46	30	20	
D 선택지표	10.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7	5	3	2	
	11.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8	6	4	2	
	12. 사업계획서 상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10	8	6	4	
	13.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3	2	1	
	14. 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을 이행하였는가?	6	4	2	1	
소 계		35	26	17	10	
총 계		100	66	41	24	

IV 결론

□ 소규모 시설 위탁지표개발의 과정과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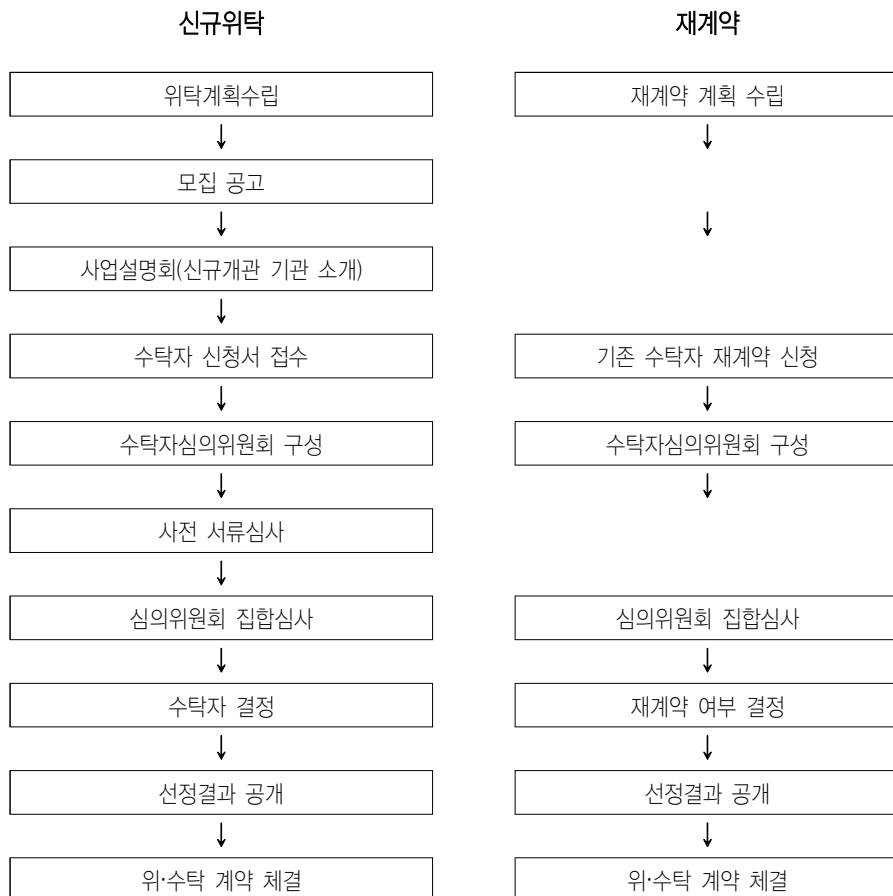
- 지표가 너무 많거나 복잡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준비가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표준화 된 과정과 지표 필요
 - 시·군에서 시행된 위탁심의 사례를 볼 때 각 지자체별로 표준화 되지 않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절차와 과정 또한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음
 - 이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과정과 지표를 표준화 하고 과정을 정리하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음
- 시설현장과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의 직접적인 요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소규모 시설 위탁에 필요한 지표를 구성하였음

〈표 IV-1〉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 내용

공통심사영역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의 기초	지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자의 적격성 ○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 지자체별 상황에 따른 선택 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의 적절성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지도감독사항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탁시설의 평가결과 · 시설장의 전문성 및 시설위탁의 추진의지 · 시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수탁기간의 재정부담계획 · 인력관리계획 ● 선택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아동/장애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 시설장의 해당 분야 경력 · 시설 종사자 건강관리, 인권교육, 안전교육 계획 · 이용자의 안전관리 계획 	⇒ 각 개별 항목별 지표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계약 시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 기간 동안의 사업성과 · 운영비 대비 사업비 비율 · 프로그램 내용 · 최초 수탁에서 제시한 사업의 이행정도 	

- 경기도 소규모 시설 민간위탁 지표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안내에 제시된 기본 영역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시설에서 특히 적용되어야 할 사항을 지표로 구성하였음
 - 기존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활용되고 있는 심의기준을 기반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내용과 새로이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통합한 형태의 지표 개발
 - 가능한 한 필수항목만으로 설계된 지표는 타 유형의 지표들에 비하여 법인 역량을 확인하는 세부 지표를 지양하고 간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신규시설을 최초 공개모집하고 위·수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와 이미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는 주체와의 재계약을 위한 지표로 구분하여 목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표 IV-2〉 신규위탁과 재계약 위탁절차



*출처 : 유정원(2019) 경기도 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 2019년 이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도 종사자로서 법인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는 규정¹³⁾에 따라 시설장 내정자가 수탁심의에서 사업의 내용과 계획을 설명하는 절차의 변화가 예상됨
- 이에 따라 법인 관계자가 직접 사업설명을 하는 경우와 시설장 내정자가 설명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시설장의 경력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하였음
 -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종사자 인력의 건강, 인권 감수성,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공통지표와 선택지표를 구분하여 시·군의 필요에 따라 지표 전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지표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법인전입금 부담계획, 시설장의 유사 시설에서의 경력기간, 시설장의 전문성 등 민간위탁 현장에서 깊게 논의되는 사항이 포함 됨

□ 소규모 시설의 민간위탁 절차에 따른 지표의 활용방안

- 신규위탁과 재계약으로 구분되는 과정에 필요한 과정의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심의하는 영역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설정할 수 있음
 - 신규위탁 심의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을 수탁 운영하게 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적격성과 운영 능력을 평가 하게 됨
 - 법인 재정 운영 건전성, 타 시설 운영경험 또는 실적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수탁기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음
 - 재계약 지표는 신규위탁 시에 제안되었던 대로 사업을 수행했는지 인력관리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됨
- 민간위탁 과정과 지표 사용에 대한 공무원 교육과 각 부서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지자체의 공무원은 직무이동이 잦은 편이며 민간위탁은 3~5년 주기로 이루어지므

13)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와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맺어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도 해당 시설을 수탁운영하기 위한 시설장 및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맺어야 함. 시설 수탁자 모집 공고나 계약서에 반드시 종사자 직접고용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함. 2021년 실제 시행(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2019)

로 담당자 마다 다른 방법과 지표로 위탁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¹⁴⁾

-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시설 담당자만을 위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정례적으로 자료집을 마련하고 이를 경기도 31개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제안된 모든 지표를 반드시 똑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시·군 상황에 따라 응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함
- 공통지표와 선택지표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를 채택하여 응용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적인 영역과 지표의 의도와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권고 함
- 민간위탁 과정 수행과 지표사용에 대한 지침(매뉴얼)을 제공하고 새로운 선정심의 지표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위탁심의회에서 투명성,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독려함으로써 지자체 위탁심사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복지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전문성을 가진 수탁자의 적극적 기관운영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음
 - 시·군 담당부서에 지침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

14) 유정원(201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참고문헌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2020). 2020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1). 경기도 보건복지부(2019). 『2019 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 _____ (2020). 2020 다함께돌봄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유정원(201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절차와 지표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 유정원 · 이사라 · 김정희(2018).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서비스품질 평가지표 개발』. 경기복지재단
- 유정원(201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과정개선 연구』. 경기복지재단
- 서울시장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http://www.saswfd.or.kr/>
- 고양시청 <http://www.goyang.go.kr/>

부 록

1.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신규위탁)
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재계약)

1.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신규위탁)

심사영역	심사 문항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A 수탁자의 적격성 (28)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시설 위탁의 연계성은 어떠한가?	6	4	2	1	
	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이사회 구성은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4	-	2	1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준
	3.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1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6	4	2	1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25)	6.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3	-	-	1	
	7.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6	4	2	1	
	8.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6	4	2	1	
	9.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10	8	6	4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10.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6	4	2	1	
E 종합의견 (6)	11. 심사위원 종합의견	6	4	2	1	
소 계		65	40	24	14	
D 선택지표	12.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7	5	3	2	
	13.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8	6	4	2	
	14.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는가?	10	8	6	4	
	15.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3	2	1	
	16. 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어떠한가?	6	4	2	1	
	소 계		35	26	17	10
총 계		100	66	41	24	

• 위 지표의 사용상 유의사항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지표는 설립 3년 미만의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는 적용하지 않음(경쟁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평균값을 적용)
- 배점과 내용은 지표의 내용은 위탁 상황에 맞게 시·군 담당이 변경할 수 있음
- 선택지표의 사용여부는 시·군에서 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의견까지 포함하여 65점 만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쓸 수 있음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시설 수탁의 연계성은 어떠 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에 수탁하고자 하는 해당 사회복지분야가 명시되어 있다. ②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③ 운영규정 내용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내용이 적절하다.		
	탁월(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3)	위 항목 중 필수항목 ①을 포함한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중 필수항목 ①을 제외한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이하에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정관 내에 목적사업 및 내용과 시설 수탁의 연계를 위해 정관, 운영규정집 등을 평가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정관 목적사업에 해당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가? ○ 기관의 운영규정집의 내용이 시설을 수탁하기에 충실한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의 목적사업이 어느 분야에 중점 되어 있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정관 ○ 운영규정집 : 시설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사회나 운영주체의 의결기관에 의해 채택된 별도의 규정으로 현재 사용되는 규정만 인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참고 하여 기관의 운영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기관의 정관과 운영규정집의 존재여부를 먼저 확인 후 내용의 충실성을 판정한다. ○ 정관 목적사업 확인 ○ 사단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위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집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비고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이사회 구성은 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전문가의 비율이 30% 이상이다. ②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비율이 20% 이하이다. ③ 이사회 구성 관련 근거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외부추천이사제 규정을 따르고 있다.														
	우수(3)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1~2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타 법인격 주체는 위의 ④번 해당사항 없음 ○ 시설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표 및 이사회의 인력구성이 적정한지를 확인함. ○ 이사는 7인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함) 이사회에 구성에 있어 시행령 제9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 현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구성이사의 적절성 평가 : 이사의 주요경력 및 사회복지전문가의 참여를 정도를 보고 판단 ○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리 담당자는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사가 교체될 때 외부추천이사제의 적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사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 추천한 사람 중 선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근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이사정수</th> <th>필요 외부추천이사 수</th> </tr> </thead> <tbody> <tr> <td>7명 / 8명</td> <td>2명</td> </tr> <tr> <td>9명 / 10명 / 11명</td> <td>3명</td> </tr> <tr> <td>12명 / 13명 / 14명</td> <td>4명</td> </tr> <tr> <td>15명 / 16명 / 17명</td> <td>5명</td> </tr> <tr> <td>18명 / 19명 / 20명</td> <td>6명</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개최회수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위의 조건은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리안내 “이사회 의 구성”에 근거함. 			이사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이사정수	필요 외부추천이사 수														
7명 / 8명	2명														
9명 / 10명 / 11명	3명														
12명 / 13명 / 14명	4명														
15명 / 16명 / 17명	5명														
18명 / 19명 / 20명	6명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 이사회 회의록, 회의결과 보고 등 ○ 이사회 조직도 														
비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예시 : 출연자,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3.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인 경우		□ 6점
	우수(4)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 미만		□ 4점
	보통(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90% 미만		□ 2점
	미흡(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 미만인 경우		□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의건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적절성을 판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019. 6. 12 시행) 제42조2(회계감사) ① 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3항제2호에 따라 사업 목적 외에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p> <p>「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제42조4항에 따라 감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p>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등 회계감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였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감사보고서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 실천률이 8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 (사회복지법인에 해당) ○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미흡으로 처리(사회복지법인에 해당) ○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흡처리 (공개는 홈페이지, 시설의 내부, 시청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공개 내용을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자체감사 계획으로 같음 한다.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내부의 이사 또는 감사가 실시한 감사도 인정한다. ○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은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4.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지적사항이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지적사항이 미비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지적사항은 있으나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도감독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복지 시설 운영주체로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탁 후 시설과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활동을 평가함 ○ 사회복지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참고 ○ 최근 3년 이내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의 건수와 내용을 확인하되, 건수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심사 ○ 지적사항이 경미하다는 것은 내부에서 바로 수정조치가 가능한 정도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산하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경기도, 지자체로부터의 지적사항 내용 중 한 가지 라도 있으면 해당 ○ 최근 3년 이내 매년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나타난 지적사항 ○ 수탁신청서, 공문서철 등. 			
비고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5.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하이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 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능력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수탁 받은 심의일로부터 3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소 수 비례 평가 점수 평균 ○ 수탁 신청 시설별 운영평가 실적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회복지사업실적 ○ 시설의 유형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연도별 시설 관리안내 참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미해당.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6.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아동 관련 시설 시설장의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노인 관련 시설 시설장의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시설 시설장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3점
	보통(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노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2, 3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시설장 또는 종사자로서 필요한 자격증을 보고 판단한다.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간 동안 시설장(내정자) 및 종사자 자격현황 확인할 것 ○ 위·수탁 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할 것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7.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	□6점	
	우수(4)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를 신뢰할 수 있으나 추진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	□4점	
	보통(2)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2점	
	미흡(1)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사업주체(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과 적극적인 추진의사 ○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 수탁시설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 수탁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 사업추진에 대한 현실가능성, 명확성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시설장(내정자) 면접 또는 사업계획 설명으로 판단 			
비고	정성평가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8.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종사자 채용기준 및 근거와 조직구성(안)이 마련되어 있다. ②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기준이 확보되어 있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 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인력구성 방안 및 채용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탁월(6)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를 고려한 인사관리 체계, 전문인력의 구성, 인력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역량을 평가함. ○ 사업계획서의 인력운영, 인력관리계획에서 시설 전문 인력이 적정하고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며, 타당 한가로 판단. ○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기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시설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동일분야 경력이 7년 이상이다. ③ 시설 부장 및 사무국장 이상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 해당 시설의 전문 인력 기준(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는가? ○ 중간관리자 및 적정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이 구체적이고 치밀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등 ○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비고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의 전문성
심사 항목	9.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높다.	<input type="checkbox"/> 10점	
	우수(4)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input type="checkbox"/> 8점	
	보통(2)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6점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input type="checkbox"/> 4점	
해설	<p>○ 신청 시설의 운영계획과 사업계획 중 세부 프로그램 목적·목표의 구체성과 연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시설 위탁의 적합성을 확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차별 계획의 명확성 -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 - 시설의 목적사업과 특화사업의 구분 <p>○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 등이 구체적인가?</p> <p>○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p> <p>○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가?</p> <p>○ 사업계획서는 사업목적, 대상, 예산, 목표, 프로그램명, 담당자, 연차별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증빙 자료	<p>○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p> <p>○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p>			
비고	정성평가			

영역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심사 항목	10.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2차 자료 포함) ②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자원의 개발, 관계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 할 의지를 확인함 ○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여부를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실천을 위한 자원 확보 계획 등 대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 		
비고			

영역	라. 종합의견		심사 지표	G. 종합의견
심사 항목	11. 심사위원 종합의견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신청 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수탁신청자의 분야에 대한 이해정도와 전문성
심사 항목	12.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안내(지침)를 이해하고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③ 수탁운영 할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 및 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④ 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경우에 따라 직접서비스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탁월(6)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정부(경기도, 시·군)에서 제시한 사업안내 또는 사업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보수, 재무회계, 개인정보관리 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 사업계획에 제시된 수탁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진행예정 사업포함) ○ 기관의 운영 목적과 현황,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방정부 지침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한다. ○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한다.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시설장 예정자의 해당 분야별 경력 정도
심사 항목	13.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④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8년 이상 ③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10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8년 미만 ②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8~9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6년 이상 ①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8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6년 미만			
	탁월(8)	위 항목 ④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8점	
	우수(6)	위 항목 ③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보통(4)	위 항목 ②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미흡(2)	위 항목 ①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관리자(팀장이상) 또는 시설장으로서 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을 의미한다. ○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 ○ 유사시설의 경력은 수탁받고자 하는 시설과 같은 분야 기관의 근무 경력을 의미한다. 			
증빙 자료	○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정량지표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계획
심사 항목	14.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종사자 인력관리 관련 주요내용과 필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준비되어 있다. ② 안전관리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③ 종사자와 이용자 관련 인권교육 계획이 있다 ④ 노인, 장애인, 아동 직접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계획이 있다. ⑤ 관련 범죄사실 확인 계획이 있다.		
	탁월(10)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0점
	우수(8)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8점
	보통(6)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미흡(4)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 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 자체평가내용에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교육계획서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규정 - 종사자 관리계획에 건강진단서 - 범죄사실증명서 확인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와 질문을 통해 판단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심사 항목	15.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시설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 ②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연 1회 이상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 ④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우수(3)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3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위와 같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산 상 계획이 현실가능성이 있는 정도인지 확인한다.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와 질문을 통해 판단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 계획
심사 항목	16.시설 운영을 위해 향후 수탁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연평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5% 이상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연평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4~5% 미만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연평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3~4% 미만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연평균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자부담 예정액이 1년 지자체 보조금의 3% 미만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확보한 수탁대상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 / 수탁대상시설의 연간예산 * 100)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 계획을 상대적으로 판단 ○ 보조금은 수탁대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주체가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지원받는 사업비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약서에 명시)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의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시설 사업계획서 내 자부담 예산 규모액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수탁신청 신청 액의 평균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 계획에 따라 평가. 			

2. 소규모시설 위탁심사 지표 (재계약)

심사영역	심사 문항	탈월	우수	보통	미흡	비고
A 수탁자의 적격성 (18)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6	4	2	1	
	2. 수탁기간 최근 3년간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3.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6	4	2	1	해당사항 없음은 우수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5)	4. 시설장 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3	-	-	1	
	5.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에 대한 추진의지는?	8	6	4	2	
	6.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의 실행여부는 어떠한가?	12	10	8	6	
	7. 시설의 사업계획의 실행실적은 어떠한가?	12	10	8	6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6)	8.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6	4	2	1	
E 종합의견 (6)	9. 심사위원 종합의견	6	4	2	1	
소 계		65	46	30	20	
D 선택지표	10.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7	5	3	2	
	11.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8	6	4	2	
	12. 사업계획서 상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10	8	6	4	
	13.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4	3	2	1	
	14.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어떠한가?	6	4	2	1	
소 계		35	26	17	10	
총 계		100	66	41	24	

● 위 지표의 사용상 유의사항

- 배점과 내용은 지표의 내용은 위탁 상황에 맞게 사·군 담당이 변경할 수 있음
- 선택지표의 사용여부는 사·군에서 정할 수 있음
- 선택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합의견까지 포함하여 65점 만점을 100분율로 환산하여 쓸 수 있음
예) 취득점수 55 ÷ 65 × 100 = 84.6 (최종점수)
- 선택지표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100점 만점 그대로 적용함
- 신청자가 취득한 전체지표의 합계를 최종점수로 함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집행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고,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100% 미만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90% 미만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 않거나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회계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정도가 80% 미만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재정관리가 적절하고 타당하게 운영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회계의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인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정기적인 회계감사, 적정의견 수렴, 공개여부 등을 통해 회계의 적절성을 판단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점검을 받고 있는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을 받았는가?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회계집행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가? ○ 회계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하였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감사보고서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결산서 및 부속 명세서(기부금·후원금 관리현황 자료 확인).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선사항 실천률이 80% 미만이면 미흡으로 처리. ○ 공인회계사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미흡으로 처리. ○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 미흡처리 (공개는 홈페이지, 시설의 내부, 시정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공개 내용을 관련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은 자체감사 계획으로 같음 한다.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내부의 이사 또는 감사가 실시한 감사도 인정한다. ○ 외부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받은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2. 수탁기간 최근 3년간 지도감독에서 드러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시정조치완료건수 / 지적사항건수 X 100 → 100%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시정조치완료건수 / 지적사항건수 X 100 → 90% 이상 ~ 100% 미만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시정조치완료건수 / 지적사항건수 X 100 → 80% 이상 ~ 90% 미만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시정조치완료건수 / 지적사항건수 X 100 → 80% 미만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및 단체의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조치 정도를 확인하여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운영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 지적 건수에 대한 조치율을 산정하여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운영의 개선 정도를 판단한다. ○ 지도감독에서 드러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자료 ○ 수탁신청서, 공문접수철, 발송철 ○ 민간위탁 부서에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여 조치결과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을 보고 판단하되,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정완료 되지 못한 사항임이 인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영함 			

영역	A. 수탁자의 적격성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적격성
심사 항목	3.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9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수탁시설의 평가 결과점수 평균이 70점 이하이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에서 수탁 중인 시설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평가함. ○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 시설은 미산입.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수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산하시설 중 평가대상 시설 파악과 평가대상 시설 평가결과 점수(총점)를 확인하여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능력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을 수탁 받은 심의일로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개소 수 비례 평가 점수 평균 ○ 수탁 신청 시설별 운영평가 실적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사회복지사업실적 ○ 시설의 유형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연도별 시설 관리안내 참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은 미해당.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4.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여부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3)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아동 관련 시설 시설장의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노인 관련 시설 시설장의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시설 시설장 필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3점
	보통(1)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아동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노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장애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 1점
해설	○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 2, 3급의 소지여부를 보고 판단한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종사자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보고 판단한다.			
증빙 자료	○ 직원인사기록카드, 시설장의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비고	○ 수탁기간 동안 시설장(내정자) 및 종사자 자격현황 확인할 것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5. 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의 시설 수탁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점수
평가 내용	탁월(8)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계획이 구체적이며 의지를 신뢰할 수 있다.		□ 8점
	우수(6)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를 신뢰할 수 있으나 추진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		□ 6점
	보통(4)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와 계획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 4점
	미흡(2)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 2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 열의, 철학, 비전, 태도 등을 평가하고 사업주체의 추진의지를 확인함. ○ 사업주체(시설장 내정자 또는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관계자)의 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지식 과 적극적인 추진의사 ○ 시설 운영에 대한 사업주체의 비전과 계획안을 확인하여 평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은 어떠한가? ○ 사업주체의 시설운영에 대한 열의와 태도는 어떠한가? ○ 수탁시설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가? ○ 수탁시설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 사업추진에 대한 현실가능성, 명확성은 어떠한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근무경력확인서류 및 자격증 사본 ○ 시설장(내정자) 면접 또는 사업계획 설명으로 판단 			
비고	정성평가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시설장 및 종사자
심사 항목	6. 시설 전문 인력 확보 및 관리계획의 실행여부는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채용기준 및 근거(안)와 조직구성(안) 대로 종사자를 채용하였다. ② 해당사업 관련 중간관리자의 자격기준 대로 종사를 확보하였다. ③ 공개모집에 따른 시설장 및 종사자 고용계획에 따라 고용하였다. ④ 인력구성 방안 및 채용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충실하다. ⑤ 종사자 인력 중 60% 이상이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다.		
	탁월(12)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2점
	우수(10)	위 항목 중 4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0점
	보통(8)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8점
	미흡(6)	위 항목 중 2가지 이하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관 종사자의 채용, 육성, 평가, 처우를 고려한 인사관리 체계, 전문 인력의 구성, 인력관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운영 역량을 평가함. ○ 사업계획서의 인력운영, 인력관리계획에서 시설 전문 인력이 적정하고 운영방안이 효과적이며, 타당한가로 판단. ○ 전문인력 운영방안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를 정성적으로 평가 ○ 해당 시설의 전문 인력 기준(자격범위, 채용방법 등)이 수립하고 실행하였는가? ○ 중간관리자 및 적정 자격증 소지자 확보방안 대로 인력을 확보하였는가?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계획서와 실행 증명서류 확인 ○ 인사관리 규정안, 종사자 채용관련 기준 근거 규정안 등 ○ 중간관리자 전문성 확인서류 		
비고			

영역	B.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심사 지표	사업계획 및 평가의 전문성
심사 항목	7.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12)	사업계획 및 평가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높다.	<input type="checkbox"/> 12점	
	우수(10)	사업계획 및 평가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input type="checkbox"/> 10점	
	보통(8)	사업계획 및 평가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낮다.	<input type="checkbox"/> 8점	
	미흡(6)	사업계획 및 평가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input type="checkbox"/> 6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시설(사업) 운영계획 수립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운영계획을 기관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포함 항목 ① 기관 및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인력현황 (이용자, 종사자) ③ 서비스 제공관련 사항 (목적, 대상, 내용, 제공절차, 제공방법 등) - 필수항목이 포함된 시설(사업) 운영계획의 내용 상 명확성, 실현가능성, 시설의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 ○ 사업계획서의 상호 위계적, 유기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주체의 수행역량과 계획의 체계성, 실현성 등을 판단.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 등이 구체적인가? ○ 사업계획서상의 프로그램은 목적·목표·세부프로그램 수행방법 등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가? ○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목표들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달성 가능한가? ○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위한 사업평가와 평가결과 활용(환류)을 하고 있는지 확인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수탁기간 시설 운영계획서 ○ 신청 사업계획서 (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 사업평가 결과보고서 			
비고	정성평가			

영역	C.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심사 지표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심사 항목	8.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점수
평가 내용	①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조사(분석)를 실시하였다. ② 수탁 후 시설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개발, 네트워크형성, 자원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있다. ③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연계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④ 신청 사업계획서 내에 지역사회조직활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3)	위 항목 중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위 항목 중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하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자원의 개발, 관계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한 결과 확인 ○ 사업계획서 안에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부를 평가함. ○ 사업계획서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계획, 사업실천을 위한 자원 확보 계획 등 대 지역사회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또는 향후 시설운영계획서를 보고 판단. ○ 시설(사업) 계획서 및 평가결과 참고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 향후 시설 운영계획서 		
비고			

영역	E. 종합의견		심사 지표	G. 종합의견	
심사 항목	9. 심사위원 종합의견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신청 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판단.				
증빙 자료	○ 심사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료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수탁신청자의 분야에 대한 이해정도와 전문성
심사 항목	10. 신청자의 사업 및 기관 운영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①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안내를 이해하고 있다. ②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다. ③ 수탁운영 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 및 과정을 위한 개선의지가 있다. ④ 기관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⑤ 경우에 따라 직접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탁월(6)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7점
	우수(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5점
	보통(2)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3점
	미흡(1)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정부(경기도, 시·군)에서 제시한 사업안내 또는 사업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관리, 교육 및 훈련, 보수, 재무회계, 개인정보관리 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 사업계획에 제시된 수탁기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진행예정 사업포함) ○ 기관의 운영 목적과 현황, 지역 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지 확인한다. ○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방정부 지침에 대하여 질문하고 확인한다. ○ 프로그램 내용 및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확인한다.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시설장 예정자의 해당 분야별 경력 정도
심사 항목	11. 시설장 예정자는 기관운영 책임자로서 경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④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유사 시설의 경력 8년 이상 ③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10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8년 미만 ②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8~9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6년 이상 ① 시설(기관) 근무경력이 8년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 6년 미만			
	탁월(8)	위 항목 ④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8점	
	우수(6)	위 항목 ③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보통(4)	위 항목 ②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미흡(2)	위 항목 ①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해설	<input type="radio"/> 중간관리자(팀장이상) 또는 시설장으로서 시설 또는 유사시설의 경력을 의미한다. <input type="radio"/> 유사시설의 경력은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같은 분야 기관의 근무 경력을 의미한다.			
증빙 자료	<input type="radio"/> 경력증명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서비스 제공인력 관리계획
심사 항목	12. 시설 종사자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였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종사자 인력관리 관련 주요내용과 필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② 안전관리 교육 실시하고 있다. ③ 종사자와 이용자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노인, 장애인, 아동 직접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⑤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범죄사실 확인을 실시하였다.		
	탁월(10)	위 항목 5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0점
	우수(8)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8점
	보통(6)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6점
	미흡(4)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에 위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 자체평가내용에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교육계획서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규정 - 종사자 관리계획에 건강진단서 - 범죄사실증명서 확인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와 질문을 통해 판단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심사 항목	13.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는가?		점수
평가 내용	① 시설에 대한 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 ②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③ 연 1회 이상 종사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연 1회 이상 이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탁월(4)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모두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4점
	우수(3)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3점
	보통(2)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 된다.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위와 같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산 상 계획이 현실가능성이 있는 정도인지 확인한다.		
증빙 자료	○ 사업계획서와 질문을 통해 판단 ○ 자부담 이행 내역이 명시된 기관의 정산보고서 등		
비고			

영역	D.선택지표	심사 지표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 계획
심사 항목	14. 수탁기간 중 최근 3년간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계획의 이행실적은 어떠한가?		점수
평가 내용	탁월(6)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5% 이상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6점
	우수(4)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5% 이상 ~ 95% 미만	<input type="checkbox"/> 4점
	보통(2)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이상 ~ 85% 미만	<input type="checkbox"/> 2점
	미흡(1)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미만	<input type="checkbox"/> 1점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시설 운영의 재정부담 능력을 확인하여 해당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자주적인 사업운영 및 추진의지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 정도를 평가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이 확보한 수탁대상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 부담비(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 비중(자체부담비(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전입금) / 수탁대상시설의 연간예산 * 100)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관의 재정부담 계획을 신청기관들의 수탁대상 시설 연간예산 대비 자체부담비 비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재정부담 계획을 상대적으로 판단 ○ 보조금은 수탁대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주체가 지자체로부터 분기별로 지원받는 사업비 ○ 수탁신청 금액, 향후 재정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명시되어진 자료로 판단 ○ 신청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향후 위탁기간 동안의 자부담액은 어떠한가? (위탁계약서에 명시) ○ 부담액의 비중은 어떠한가? ○ 재정부담 계획이 없는 경우엔 미흡으로 판정.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부담 약정액(위탁계약서에 명시) 대비 이행실적 ○ 법인의 예산서와 결산서 자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액은 순수하게 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에 한함. ○ 수탁신청 신청 액의 평균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신청법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의 재정부담 계획에 따라 평가.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20-07

경기도 소규모시설 민간위탁 지표개발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인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